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55호(號) 1935(昭和 10)년 3월 22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71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 내 철도·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朝鮮內鐵道·軌道及航路間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1935(昭和 10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3월 2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조(條) 중(中) 제7호(號)를 제9호(號)로 개정(改正)하고 제6호(號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7 북일본기선(北日本汽船)이란 북일본기선주식회사(北日本汽船株式會社)를 말함.

8 도곡기선(嶋谷汽船)이란 도곡기선주식회사(嶋谷汽船株式會社)를 말함.

제8조(條)제4호(號) 중(中)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」을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항(敦賀港) 간(間), 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니카타항(新潟港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11조(條)제1항(項) 단서(但書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단(但), 북일본기선(北日本汽船) 및 도곡기선(嶋谷汽船) 항로(航路)에 있어서는 1인(人)에 한(限)함.

제13조(條)제5호(號) 중(中)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」을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항(敦賀港) 간(間), 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니카타항(新潟港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하고, 동조(同條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6 목포(木浦)·제주(濟州) 간(間) 항로(航路) 2,3등(等) 2할(割)

제14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」을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항(敦賀港) 간(間), 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니카타항(新潟港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20조 단서(但書) 중(中)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 이외의 항로(航路)」를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항(敦賀港) 간(間) 및 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니카타항(新潟港) 간(間) 이외의 항로(航路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22조(條) 중(中)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(敦賀) 간(間)」을 「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쓰루가항(敦賀港), 웅기(雄基)·청진(淸津)·니카타항(新潟港) 간(間)」으로 개정(改正)함.